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나.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 영유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 중 가장 초기단계이자 발달이 가장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이 시기는 환경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조기발견은 적극적인 장애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영유아에게 조기진단과 적절한 시기의 치료를 시행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와

- 사회부적응에 대한 예방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4
----------	-----

발의년월일: 2021년 10월 일

발의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 다.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1. 10. 8. ~ 10. 12.):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 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4.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